

브라질의 주류산업 현황

본고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RTA) 해외조사팀에 의뢰하여 조사한 “브라질의 주류산업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목 차 ■

I. 브라질 주류산업 현황

1. 최근 주류시장 동향
2. 주요 주류의 수출입 동향

II. 지원제도 및 정부규제

1. 지원제도
2. 정부규제

III. 주류 수입 관리제도

1. 수입허가요건
2. 수입절차

IV. 주류관세

V. 주류내국세

VI. 연료용 알콜

1. 기술개발동향
2. 연료용 알콜생산의 향후전망

I. 브라질 주류산업 현황

1. 최근 주류시장동향

브라질의 주류산업은 최근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맥주제조업체간의 인수, 합병이 원동력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로 만든 전통주인 까샤사 (cachaca)를 수출육성품목으로 지정하고 남미공동시장 (Merco sur)을 통해 들어오는 아르헨티나, 칠레산 포도주에 대응하기 위해 포도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1위가 맥주로서 연간 1인당 46.8리터를 소비하고 있으며 2위가 까샤사로 연간 1인당 12리터를 소비하고 3위로는 포도주로서 연간 1인당 1.8리터를 소비하고 있음.

브라질주류협회 (Associacao Brasileira de Bebidas ; ABRABE)는 증류주의 경우 거의 절반이 음성적으로 생산, 소비되고 있어 공식통계를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함.

최근3년간 브라질의 주류시장 규모

(단위 : 천리터)

구 분	2001		2002		2003	
	국내생산	수입	국내생산	수입	국내생산	수입
맥 주	8,450,000	3,999,420	8,410,000	3,174,997	8,220,000	2,259,068
포도주	260,000	28,058,111	290,000	24,183,853	230,000	26,798,940
양 주		14,541		11,180		3,766
까샤사	1,100,000		1,300,000		1,500,000	
합계		43,603,297		44,518,661		49,685,202

2. 주요 주류의 수출입동향

1) 맥주

발효주시장은 맥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포도주이나 브라질소비 포도주의 53%는 수입하고 있음. 맥주 생산량은 미국 236억리터, 중국 225억리터, 독일 105억리터 다음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소비량은 82억2천만리터로 2002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 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적은 연간46.8리터로 나타났음.

맥주소비량은 (1994/1995)에 38리터에서 50리터로 급상승을 보인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증대에 비해 맥주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큰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 하고 있음. 맥주의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0.5헤알 (0.16불)로 세

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중의 하나이나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붙는 세금이나 마진이 너무 큰 것이 문제인데 이는 브라질 맥주산업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 국제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활동 하는데 반해 자국내에서는 몇 개 안되는 기업이 독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경쟁전략상 생산량, 소비량, 시장점유율 등에 관한 자료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음. 맥주소비는 여름성수기인 6월-7월 사이에 크고 겨울 비수기인 12월-1월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2003년도 맥주의 총매출액은 55억불이었으며 그중 23억3천만불이 제세금으로써 제세금중 5억불이 공산품세 (IPI), 15억7천불이 유통세 (ICMS), 2억6천만불이 사회기여세 (PIS와 Cofins)로 납부되었음. 맥주산업은 소비재산업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산

브라질 맥주생산량 및 연간 1인당소비량

년 도	생산량(10억리터)	1인당 소비량(리터)
1995	8.0	50.0
1996	8.0	49.3
1997	8.1	50.9
1998	8.1	50.2
1999	7.8	48.0
2000	8.2	49.8
2001	8.5	50.3
2002	8.4	48.0
2003	8.2	46.8

업으로 자동차나 담배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맥주는 특별 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주유통세(ICMS)의 경우 맥주제조업체가 유통업자나 소매업자들의 세금을 먼저 대납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납세제도는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 저하 및 납세부담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맥주 1리터당 세금으로 내는 것이 기업 순매출의 126%로서 미국의 경우 대략 매출액의 55%를 차지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있음. 브라질 맥주시장은 AmBev, Kaiser, Schincariol 3개 업체가 약 9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AmBev가 64.3%, Schincariol이 14.1%, Kaiser가 11.6%를 점유하고 있음. AmBev는 브라질 최대 맥

주기업이자 세계 5대 맥주회사 중에 하나이며 Brahma, Antarctica, Skol의 3개 유명 브랜드제품을 갖고 있음. AmBev는 브라질 시장의 70.1%를 점유하고 있으나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AmBev의 독과점문제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계속 성장추세이며 이미 40여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 중에 있음.

2) 포도주

브라질의 포도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수입 포도주의 범람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큰 변화를 겪고 있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 향후 변화가 예상 됨. 브라질 포도주 산업은

남부지역 (Rio Grande do Sul주)에 편중되어 있으며 포도품종을 다른 남미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럽산 대신 미국산과 그 변종 (hibrid)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포도종은 미국원종으로, 최대 생산지인 캘리포니아가 유럽종(Vitis vinifera)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산의 90%는 유럽종임.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의 포도주는 대부분 일반포도주 (table wine)이며 고급포도주 (quality wine)의 생산은 극히 한정되어 있음. 브라질의 와인생산은 16세기로 올라가나 상업적인 생산은 남부지방인 Rio Grande do Sul 지역에 1875부터 이태리 이민이 정착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며 1970년대부터 와인산업이라는 명칭이 불릴 정도로 규모가 늘기 시작 하였으나 와인은 미국포도의 개량종으로 저급품으로 연간 소비량이 1인당 2리터 정도에 불과함. 고급와인의 생산은 극소량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브라질의 경제기적 때 다국적기업인 Seagram, Martini & Rossi, Moet et Chan don 등이 진출하여 유럽종포도 (Vitis vinifera)를 사용하여 와인생산을 시작하였음. 와인생산은 Rio Grande do Sul 지역에 90%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이 브라질의 와인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동지역중

Serrana지역에 생산지의 90%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Caxias do Sul, Bento Goncalves, Flores da Cunha, Farroupi Iha가 주요 생산 도시임. 와인의 생산과 판매는 협동조합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Bento Goncalves 시에 본거를 둔 Aurora 협동조합은 브라질 와인총생산량의 10% 이상 (약 29백만리터)을 생산하고 있음. 동 지역의 포도주는 2002년에 INPI (브라질특허청)로부터 지리적표시권을 인정 받았으며 동 지리적표시권은 제조업체에게 생산 및 상업화에 까다로운 준수 사항을 요구하는 대신 포도주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향후 원산지명칭 (denomination of origen)을 받기위한 전 주곡인 것으로 보임. 브라질의 와인은 대부분 파라과이에 연간 1백만불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이 남미에서 미국포도와 그 변종을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임. 수입은 시장개방 이전 이었던 1990년 초까지는 연평균 2천만불이 수입 (약 1만톤) 되었으나 2000년에는 8천만불 (약 3만톤)로 수입이 증가 되었음. 주요 수입국으로는 칠레,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가 2003년에 수입품의 약 90%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 프랑스, 이태리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1980년대말 각 150만불 내외에서

2003년에는 각 1,100만불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1990년 수입시장 개방은 브라질 소비자의 취향을 변화시켰으며 브라질산의 경쟁력 낙후는 포도재배에 어려운 기후(수확기 전에 우기동반)가 큰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아르헨티나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써 Mercosul은 브라질의 시장 보호조치를 불허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 양국의 환율은 브라질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와인의 품질도 수입산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그러나 와인의 소비량이 지난 96년의 2.27리터에서 2002년에는 3.42리터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와인소비 패턴의 변화가 예상됨.

3) 까샤사(Cachaca) 증류주

브라질의 증류주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브라질 정부는 까샤사가 브라질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증류주로 인정하고 수출증대에 주력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주요 정책으로는 사탕수수 증류주 개발 프로그램 (Programa de Desenvolvimento da Aguardente de Cana, Caninha e Cachaca PBDAC) 이 있으며 여기에는 까샤사 생산업체의 80%가 참여하고 있으며 브라질주류협회 (ABRABE -

Associacao Brasileira de Bebida)가 주관하고 있음. 이외에 연방정부는 수출진흥 특별프로그램 (Programa Especial de Exportacao - PEE)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 수출진흥청 (Agencia de Promocao de Exportacoes - APEX) 은 브라질주류협회와 수출증대에 관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브라질 정부가 까샤사를 수출전략품목으로 키우는 이유는 1) 브라질에서 가장 사랑받는 증류주라는 점과, 2) 총소비량에서 맥주 다음으로 2위 차지하고 있으며, 3) 브라질의 소비량만으로도 증류주 중에서 세계 3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계시장공략이 쉽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까샤사 시장은 2003년 통계기준으로 약 13억리터이며 이중 산업생산용이 10억리터, 나머지 300만리터가 숙성용 (보통 오크통에서 숙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류주에 대한 시장조사 통계는 음성적인 생산과 유통이 많아 브라질주류협회조차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고 함. 다만 그중에서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으로는 Cia. Muller de Bebidas Ltda, Cachaca Export Comercio e Importacao Ltda, Engarramento Pitu Ltda, Industria de Bebidas Pirassununga Ltda, SAB - South American Beverages Comercial Ltda, Ypioca Agroindustrial

Ltda 등이 있음. 2003년에 14백만리터를 수출했으며 2004년에는 약 10%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약 5천만리터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는 60여개국에 브라질의 까샤사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30%가량이 유럽으로 수출되고있음. 최대 수입국은 독일이며 까이삐리냐 (caipirinha: 까샤사에 설탕과 레몬즙을 넣은 각테일주)가 여성층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재 브라질 수출의 29%가 독일로 수출되고 있음. 일본은 long neck까이삐리냐 (알콜 5% 함유)를 수입판매하며 소위 ice drink류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요구르트병 같은 플라스틱용기에 레몬조각을 넣은 까이삐리냐를 판매하고 있음. 브라질에는 현재 약 5천여 브랜드에 3만여 생산업체가 있으며 브라질정부는 2003년부터 cachaca라는 고유명칭으로 보호하면서 유럽연합과 국제협상을 시작 하였음. 또한 브라질정부는 지난 2001.12.21. cachaca를 '지리적표시'로 보호하고 cachaca란 명칭은 반드시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cachaca의 특성이 있어야만 cachaca로 인정 (대통령령 제4602호)하고 있음. 브라질의 증류주시장은 연간 5억불정도의 시장규모로서 40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2003년에 세수익은 대략 2천6백만불이며 향후 성장전

망이 밝은 주류품목임.

II. 지원제도 및 정부 규제

1. 지원제도

브라질정부는 주류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세인센티브와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수출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융지원은 주로 산업개발은행 (BNDES -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e Social)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첫 4개월간 1억8천만불을 식음료산업에 자금 지원했고 2003년에 들어서는 3억 1천 5백만불로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BNDES가 북동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의 공공성도 고려되고 있으며 수출금융의 경우 BNDES는 BNDES-EXIM이라는 소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유사한 금융지원을 브라질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 지원을 통해 2002년 상반기에 식음료산업에서 14개 수출 건에 대해 총 7천2백만불 지원하였음. 주요 지원기관은 BNDES로서 개발상공무역부에 속하며 BNDES는 한국의 산업은행과 유사한 활동을 하며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1952년 6월 20일 설립된 BNDES는 주로 규모가 큰 산업분야나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수출지원을 하여 농목업에 큰 성과가 있었으며 사회자본투자, 교육, 보건, 환경, 대중교통 등에도 투자하였음.

2. 정부규제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주로 보건, 유통, 광고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이며 보건과 유통의 경우 규제는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층에서 상당량의 주류소비를 하기 때문이며 주로나 연방도로 주변에서는 (예컨대 고속도로 휴게소) 주류 판매 금지, 브라질도로교통법 (Codigo de Transito Brasileiro (Lei 9.503/97)에서도 규제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법(법률 제 80 78호, Codigo de Defesa do Consumidor - Lei n^o 8.078/90)에서도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료수병에 알콜 과음을 경고 하거나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부착 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광고규제, 음주광고에 대한 규제는 지금 여러 법안이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데 대부분이 TV를 통한 광고에 대한 규제로서 청소년보호측면

에서의 보건상 문제임. 현재도 규제강도가 상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회흐름은 이러한 규제를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추세임. 따라서 외국기업이 진입할 경우 광고와 판매시 이러한 규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최근 주류에 대한 조세특전에도 불구하고, 주류에 대한 고율의 과세가 전통적으로 원칙인데 그 이유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음은 공중보건, 국민건강과 직결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수출은 장려하되 국내 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인식하고 이중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Ⅲ. 주류 수입관리제도

1. 수입허가요건

주류수입은 기본적으로 세관규정 및 조세규정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공산품세 (IPI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Mercosur 역외지역에 대한 쿼타제도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이루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의 경우 주류수입의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허가 (자동허가가 아닌 품목) 품목은 NCM/SH에 수입허가시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관련 기관을 적기하고 있음.

2004년 8월 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수입은 비자동허가품목, 즉 사전승인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류의 분류에 따라 사전허가는 농업부 (Ministerio da Agricultura) 또는 개발상공부의 무역과 (DECEX) 또는 양쪽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iscomex에 직접 문의하는 것임. 주류의 경우 농업부는 ①CIV/DDIV/SDA/MAPA에 업체와 상품등록, ② 포도주나 관련 상품의 경우 SIV/DFA/UF/의 선적전 승인취득, ③주류수입자, 판매자 또는 생산자의 등록증 사본과 상품등록증, ④ 원산지국의 담당정부기관 또는 인가기관이 발행한 성분 분석증 사본, ⑤원산지국의 담당정부기관 또는 인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 ⑥해당되는 경우 숙성기간증명서, ⑦수입당국에 대한 등록, ⑧농축산물의 검역증명, ⑨ 세관증명 (수입허가 등), ⑩ 인보이스사본, ⑪선하증권사본을 요구 하고 있으며 농업부 (Ministerio da Agricultura)는 모든 수입절차에 필요한 안내와 해당 양식서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법률 제8918호 (Lei n° 8.918/94)는 주류의 수입관련규정을 밝히고 있는데 요약하면 제33조에서 외국산 음료는 국산음료에 적용되는 식별 및 품질의 기준을 준수할 것. 원산지국의 원산지증명 및 성분분석증의 제시와 브라

질농업부가 샘플분석을 통한 관리분석 필요. 농업부의 샘플분석을 통한 관리분석은 브라질과 검사업무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제외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외국산 주류가 브라질의 표시와 품질기준에 달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국가의 담당기관이 I 원산지국의 고유특성을 간직, II 원산지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주류, III 원산지국의 주류명과 일반적인 소비주류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브라질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제35조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된 주류는 브라질내에서 더 이상 개방, 변조되지 않아야 판매가 가능함.

2. 수입절차

수입자는 수입자등록 (Registro de Importador)과 대외무역통합시스템 등록 (Registro no Sistema Integrado de Comercio Exterior (Siscomex))을 해야 하며 수입자등록을 위해 수입업체는 개발상공무부 대외무역국(Secex)의 수출자수입자등록 (Registro de Exportadores e Importadores (REI))을 해야 함.

동 등록은 처음 수입을 할 때 Siscomex를 통해 할 수 있으며, Siscomex는 연방국세청의 무역정보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수입자는 무역거래정보를 등록하고 비자동수

입허가, 수입신고, 금융거래등록, 수입신고의 내용조회나 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Siscomex 는 Secex, SRF Banco Central do Brasil등 대외무역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통제를 통합한 프로그램임. 등록후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해야 함. NCM(메르코수르상품분류코드)은 상품분류표로 수입관세 및 공산품세 (IPI)를 부과할 때 사용되는데 브라질에는 두가지 형태의 상품분류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Mercosur 공동상품분류 (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 (NCM))이고 또 하나는 Aladi(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상품분류(Nomenclatura Aduaneira para a Aladi (Naladi-SH))방법으로서 HS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다 서로 유사한 특징이 있음. Naladi-SH는 Aladi협정 내의 무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NCM은 1995년에 설립된 것으로 Mercosul회원국이 역외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상품분류에 의문이 있을 경우 수입자는 거주지 연방국세청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에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문의가 가능함. 수입형태에 따라서 수입허가와 수입 불허가 있음. 수입허가는 자동수입허가와 사전수입승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류의 경우 비자동수입허가 (licenciamento nao-

automatico (LI). 품목으로서 주류수입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입허가 (LI)는 일반적으로 제품 하적 전까지 받으면 되나, 일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에서 선적 전에 취득해야 함. 모든 행정절차는 Siscomex를 통해 할 수 있으며 LI서식은 off-line으로 작성하여 Serpro중앙컴퓨터로 보내서 자료확인 후 LI승인을 하면서 LI 등록번호를 교부함. 해당심사기관이 심사 후 LI 승인서를 발급한 후 수입자는 60일내에 제품 선적을 해야 한다. Si scomex의 수입신고 조회서 (DI Extrato)는 수입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자는 2부를 프린트하여, 1부는 연방국세청에 ①선하증권, ②상업송장, ③세금납부증명서, ④기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IV. 주류관세

수입관세는 브라질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내국세로 연방관할이며주류 수입시 수입신고 (DI) 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는 수입자 또는 연방세법전 (CTN, 제22조 I항)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현재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일원으로 역외공동관세율 (Tarifa Externa Comum ; TEC)을 적용하고 있으며,

Mercosur 공동상품분류 (Classificacao de Mercadorias da NCM (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에 따르면 주류는 HS 22류에 해당하며 HS코드는 6자리, NCM코드는 8자리로 되어있어 6자리까지는 HS와 같고 나머지 2자리의 세부분류만 차이가 있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주류의 역외 관세율은 CAMEX 결정 제22호 (a Resolucao CA MEX n^o 22, 2004.7.20.)이며 소주(NCM : 2206.0090)와 백세주(NCM : 2204.2900)의 수입관세(I.I)는 대외공동 관세품목 중 최고관세율에 해당하는 20%임.

(품목별 관세율은 보고서 참조)

V. 주류 내국세

브라질 내에서 주류에 붙는 내국세는 공산품세(IPI), 유통세(ICMS), 사회통합기여금세(PIS) 및 사회복지기여금세(Cofins) 등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들을 합하면 각 주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35% 내외 세율이 적용됨.

1. 연방 공산품세 (IPI)

연방공산품세인 IPI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는 연방관할

이며 국내생산품과 수입품에 붙는 제품세로서 대통령령제4544호 (Decreto 4544 de 2002 (RIPI/2002)로 규정하고 있음. 공산품세는 유통세율표 (Tabela de Incidencia do IPI ; TIPI)에 나타나 있으며 면제의 경우 "NT" (nao-tributado) 표시가 되어 있음.

(품목별 공산품 세율은 보고서 참조)

2. 주유통세 (ICMS)

주유통세 (ICMS ; Imposto sobre Circulacao de Mercadorias e Servicos) 는 주정부와 연방특구의 관할이며 주유통세는 주정부의 최대 세원으로서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연방보완법 (Lei Complementar 87/1996 (일명 "Kandir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추후 연방보완법으로 (Leis Complementares 92/97, 99/99 and 102/200 0)수정 되었음. 주유통세가 주류 내국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율은 각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파울로주와 미나스제라이스주 가 18%이며 일부 주는 30%까지 (이경우 소비자가격이 16%정도 인상효과) 부과하고 있음.

3. 사회통합기여금세(PIS)

연방보완법 (Lei Complementar 07/1970)으로 시행된 사회통합기여금세

< 브라질의 관세체계 >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사용하며 관세(I.I), 공업세(IPI), 유통세(ICMS), 사회보장세(PIS/COFINS)가 누진적으로 적용됨.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로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고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됨.

⇒ 세금계산방법

(CIF가격 100불, 관세 15.5%, 공업세 5%, 유통세 18%, 사회보장세 9.25%일 경우 가정)

CIF 가격	US\$100
수입관세(I.I)	15.5%
수입관세 산정가격	US\$15.5
공업세 산정기준(CIF+I.I)	US\$115.5
공업세(IPI)	5%
공업세 산정가격	US\$5.78
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	(US\$121.28 X 100)/82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ICMS)	US\$147.90
유통세(ICMS)	18%
유통세 산정가격	US\$26.62
사회보장세 산정기준(CIF+I.I+IPI+ICMS)	US\$174.52
사회보장세(PIS/COFINS)	9.25%
사회보장세 산정가격	US\$16.14
최종가격	US\$164.04(100+15.5+5.78+26.62+16.14)

(PIS - Programa de Integracao Social)는 모든 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SIMPLES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만 면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SIMPLES는 법률 제9317호 (Lei 9317/96)로 제정된 영세기업을 위한 조세통합법임) 세율은 법률 제10637호 (Lei 10637/2002)에 따른 경우 2002.12.1.부터 1.65%로 일괄 적용됨.

4. 사회복지기여금세(Cofins)

사회복지기여금세 (Cofins - Contribuicao Social para o Financiamento daSegurI dade Social)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SIMPLES (Lei 9317/96)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은 제외 되고 있으나 기준세율은 7.6%이고 과세기준은 PIS와 같음.

VI. 연료용 알콜

1. 기술개발동향

연료용 알콜의 생산은 70년대 중반 연방정부가 세계에너지 위기 후 사탕수수를 이용한 대체연료의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연료용 알콜 개발계획 (Plano Nacional do Alcool - Proalcool)을 발표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1979년 정부는 자동차산업과 알콜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농업지역에 대한 구획정리를 통해 조세면제와 특별신용자금 지원을 통한 사탕수수 재배를 지원하여 생산된 사탕수수를 통해 알콜 생산, 화학분야, 자동차분야, 중장비분야 등 여러 분야가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1979년에서 1980년 단 1년 사이에 알콜자동차의 생산이 5%에서 25%로 급증하였음.

Proalcool정책 이전에는 설탕공장이 대부분 사탕수수재배지역에 위치하였으나 Proalcool이후에 설탕공장이 자금지원을 받아 알콜 제조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서 Proalcool정책은 고용창출, 세수익확대, 대기오염감소, 농공업기술개발, 해외에너지 의존도 감축, 무역수지 호전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알콜연료의 공급을 위해 전국 주요지역에 알콜만 생산하는 공장도 생겨남. 이러한 공장들은 보통 연료용 알콜의 생산능력이 일일 12만리터에서 18만리터 정도로 모두 hydrated alcohol (알콜93%와 물 7%, 보통 에탄올이라고 함)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에탄올이라는 알콜자동차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가솔린과 알콜을 혼합하기 위해 anhydrous alcohol (알콜순도 99.9%)을 생산하는 공장도 생겨났음. 1984년에는 알콜차가 전체 생산차량의 94.4%까지 도달했으나

80년대 말에 인센티브가 종료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알콜차의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여 95년에 알콜차는 총생산의 2% 미만으로 줄어 들었음. 2000년대 초부터 다시 알콜차의 생산이 늘기 시작했는데 석유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환경오염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자동차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2003년에 알콜연료 생산은 1996년도 수준인 125억리터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140억리터로 확대될 전망에 따라 연방정부도 알콜차량(이중연료)에 대한 세부담경감을 약속한 바 있음. Volkswagen사는 이중연료 flex fuel 의 첫 번째 개발 기업 이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를 이중연료자동차로 출시할 예정에 있음. 현재 브라질의 모든 가솔린은 법적으로 알콜을 20-24%정도 섞게 되어 있으며 동 비율은 CIMA (설탕과 알콜에 관한 부처합동위원회 (Conselho Interministerial de Acucar e Alcool)가 결정한 사항이며 브라질은 전국에 25,000개 이상의 주유소에 알콜펌프가 있어 알콜 차량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

2. 연료용 알콜생산의 향후전망

브라질의 알콜 생산은 맨 처음 hydrated alcohol을 생산한 후 재증류하여 anhydro

us alcohol을 생산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알콜공장(284개의 알콜 생산 공장중 234개 공장)은 설탕 생산 외에도 hydrated alcohol 과 anhydrous alcohol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음. 브라질은 97/98년에 154억2천2백만 리터의 알콜을 생산하였으며 현재는160억리터(중남부에 130억, 북부,북동부에 20억)의 설탕과 알콜 생산 능력이 있으나 20여개의 생산 공장이 건설 중에 있어 2006년까지 5천만톤의 알콜생산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음. 브라질은 연중 알콜 생산이 가능한데 북쪽지방의 공장은 11-4월중에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중부와 남부지역은 6월-11월중에 수확함. 따라서 한쪽 지역이 휴작일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브라질의 알콜생산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브라질은 평균 1헥타르당 77톤의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있으며 중부와 남부의 수확량은 헥타르당 81톤,상파울로주는 83톤,북부와 북동부는 60톤을 수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확량의 증대는 꼬삐르수카르기술연구소 (Centro Tecnológico da Copersucar, Piracicaba)의 기술개발에 따른 것임. 브라질 알콜공장의 평균생산성은 사탕수수 1톤당 알콜 80리터를 추출하고 있으며 중부와 남부지역은 평균 1톤당 83리터,상파

올로주는 1톤당 85리터, 북부와 북동부지역은 1톤당 70리터 추출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성의 증대는 부단한 기술개발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기계와 설비생산업체(Dedini, Zanini, Codistil)들은 상파울로주 Piracicaba와 Ribeirao Preto시의 산업단지에 몰려 있음. 브라질의 알콜생산 잠재력

이 높은 것은 브라질 전역에서 사탕수수의 재배가 가능하고 아직 재배가능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현재 기업들은 설탕생산보다는 가솔린과 배합이 가능한 알콜(anhydrous alcohol: 무수분 알콜)의 생산에 더 적극적이라 할 수 있음.

心曠則萬鍾如瓦缶，心隘則一髮似車輪。

마음이 넓으면 만종(萬鍾)의 녹(祿)도 질항아리와 같고,마음이 좁으면 한 개의 터럭도 수레바퀴와 같다.

- 채근담 -